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5. 11. 30.  
복지도시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5.11.17.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5.11.20.

다. 상정일자 : 제200회 정례회 제3차 위원회(2015.11.30.)

상정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양 회 응

### 가. 제안이유

현행 조례의 상위법령(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)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시설내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우선계약대상 범위를 추가하고 명확히 하고자 우리 구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내용

- 1) 상위법에 따른 근거조항 추가(안 제1조)
- 2) 우선계약대상 추가(안 제5조)
- 3) 우선계약대상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 추가 및 정비(안 별표)

### 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○ 본 조례안은 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, 그 밖의 공공단체는 소관 공공시설에 편의사업 또는 편의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”는 규정에 따라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우선계약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